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훈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05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김경훈, 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 구미경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종길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 박상혁, 박석, 박영한, 박춘선, 박환희, 서상열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영희, 윤종복, 이병운, 이봉준, 이상욱, 이성배, 이영실, 이종배, 이종태, 이종환, 정준호, 채수지, 최민규, 허훈, 홍국표 의원(49명)

1. 제안이유

-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휴식 및 놀이를 즐기고,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함(안 제22조의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, 국민건강증진법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(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도시공원 내 금주구역 지정) 시장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의4에 따라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2조의2(도시공원 내 금주구역 지정) 시장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의4에 따라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